

부속서 II

국경 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에 대한 비합치 조치

영국의 유보목록

서설

1. 이 유보목록은 제7나.12조(비합치 조치)제2항 및 제7가.7조(비합치 조치) 제2항에 따라, 영국이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않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7나.5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7가.3조(내국민 대우)

나. 제7나.6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7가.4조(최혜국 대우)

다. 제7나.4조(시장접근)제1항 또는 제7가.5조(시장접근), 또는

라. 제7가.6조(현지주재)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언급된 경우, 유보된 구체적인 하위분야를 지칭한다.

다. **산업분류**는, 언급된 경우, CPC, ISIC 개정판 3.1에 따라 또는 유보항목에 달리 명시적으로 기술된 바에 따라,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를 지칭한다.

- 라. **CPC**란 잠정 중앙상품분류(통계문서 시리즈 M No. 77, 국제경제사회국, 유엔통계사무소, 뉴욕, 1991)를 말한다.
 - 마. **ISIC 개정판 3.1**이란 모든 경제활동의 국제표준산업분류(통계문서 시리즈 M No. 4, ISIC 개정판 3.1, 유엔통계사무소, 뉴욕, 2002)를 말한다.
 - 바. **관련의무**는 제7나.12조(비합치 조치)제2항 및 제7가.7조(비합치 조치)제2항에 따라 유보항목에 열거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않는 제1항에 언급된 의무들을 명시한다.
 - 사. **유보내용**은 유보가 적용되는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 또는 성격을 규정한다. 그리고
 - 아. **기존의 조치**는 명시된 경우, 투명성의 목적상, 개정의정서의 발효일에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조치의 비한정적 목록을 적시한다.
3.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유보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4.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차별적인 조치는, 부여되는 양허의 가용성, 수 및 범위에 대한 제한과 모라토리엄 또는 금지의 부과를 포함하여, 천연자원 및 환경의 보존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제7나.4조(시장접근)제1항 또는 제7가.5조(시장접근)의 의미에서의 시장접근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다.

1.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유보내용

투자

1. 국가 또는 지방 수준에서 공익사업으로 여겨지는 서비스는 공공 독점 또는 사적 운영자에게 부여된 배타적 권리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2. 공익사업은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구개발 서비스,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환경 서비스, 보건 서비스, 운송 서비스 및 모든 운송형태에 대한 부수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서 존재한다. 그러한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권리는 공공 당국으로부터 양허를 받은 운영자와 같은 사적 운영자에게 특정 서비스 의무를 조건으로 종종 부여된다. 공익사업이 중앙 정부 이하의 수준에서도 종종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으로 모든 분야별 유보를 열거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 유보항목은 통신과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의 조치

2.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1. 영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의 발효일 전에 서명된 모든 국제협정에 따라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영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서비스 및 투자에 관한 내부시장을 창설하는 협정

나. 설립의 권리를 부여하는 협정, 또는

다. 하나 이상의 경제 분야에서 법령의 근접화를 요구하는 협정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서비스 및 투자에 관한 내부시장이란 서비스, 자본 및 인력

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내부적 경계가 없는 지역을 말한다.

설립의 권리란 지역경제통합협정의 발효 시까지 그 지역협정의 당사자들 간에 설립에 대한 모든 장벽을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의무를 말한다. 설립의 권리는 그러한 설립이 이루어지는 국가의 법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조건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지역경제통합협정 당사자들의 국민의 권리를 포함한다.

법령의 근접화란 다음을 말한다.

가. 지역경제통합협정의 하나 이상의 당사자들의 법령을 그 협정의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법령과 정합시키는 것, 또는

나. 공통되는 법령을 지역경제통합협정 당사자들의 법에 통합시키는 것

그러한 정합 또는 통합은 지역경제통합협정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의 법으로 입법화된 시점에만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영국은 이 항의 조건을 충족한다고 여기는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을 제15.2조(전문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에 통보한다.

한국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이 항에 따른 통보에 더하여, 양 당사국은 서비스 및 투자 위원회에서 또는 별개의 협의에서 그 양자 또는 다자 협정이 이 항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고 검토한다.

3. 영국은 다음 국가나 공국과의 기존의 또는 미래 양자 협정을 통하여 국민 또는 기업의 설립의 권리와 관련된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또는 바티칸 시국

4. 영국은 다음에 관한 기존의 또는 미래 협정에 따라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항공

나.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또는

다. 국제 대형 트럭 수송(도로 또는 철도의 복합 운송을 포함한다) 및 여객 운송(CPC 7111, 7112, 7121, 7122 및 7123)

기존의 조치

3.

분야

방위

하위분야

산업분류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영국은 무기, 군수품 및 전쟁물자의 생산, 유통 또는 거래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전쟁물자는 전쟁의 수행 또는 방위 활동과 관련하여 오로지 군사적 용도로 의도되고 제작된 제품에 한정된다.

기존의 조치

4.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관련의무

시장접근(제7가.5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영국은, 제7-다장(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따라, 자연인의 주재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GATS상 영국의 의무에 불합치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5.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기존의 조치

영국은 리스, 금융 및 이익공유 약정을 통하여 발생하는 이익과 주거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기업의 지분 인수를 포함하여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 구매 또는 이전과 관련된 과세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

분야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법률 서비스

산업분류 CPC 861의 일부 및 CPC 87902의 일부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영국은 공증과 같이 공공 기능을 위임받은 법률 전문가가 제공하는 법률 자문, 법률 인가, 문서 작성 및 증명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그리고 집행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7.

분야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감사 서비스
산업분류	CPC 86211 및 86212(회계 및 부기 서비스는 제외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가.3조)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영국은 감사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006년 회사법

8.

분야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보건 관련 전문직 서비스

산업분류

CPC 85201, 9312 및 93191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가.3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투자 - 시장접근

국립보건 서비스 소속 의사를 위한 설립은 의료 인력 계획을 조건으로 한다.(CPC 93121 및 93122)

국경 간 서비스무역 -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영국은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료보조인력 및 심리학자와 같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CPC 85201의 일부, CPC 9312 및 93191)를 포함하여, 모든 보건 관련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9.

분야	전문직 서비스
하위분야	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 상품 소매, 약사가 제공하는 그 밖의 서비스
산업분류	CPC 63211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가.3조)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영국은 의약품과 의료 및 정형외과 상품의 국경 간 소매 공급과 약사가 제공하는 그 밖의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영국 내 일반 대중에게 의약품 및 특정 의료 상품의 소매를 위해서는 영국 내 설립이 요구된다.

기존의 조치

10.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수금 대리 서비스 신용 조사 서비스
산업분류	CPC 87901 및 87902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가.3조)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영국은 수금 대리 서비스 및 신용 조사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1.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직업 소개 서비스

산업분류 CPC 87202, 87204, 87205, 87206 및 87209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영국은 다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가사 보조 인력, 그 밖의 상업 또는 산업 근로자, 간호 및 그 밖의 인력 소개 서비스(CPC 87204, 87205, 87206, 87209)의 공급

나. 사무 지원 인력 및 그 밖의 근로자 소개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기존의 조치

12.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조사 서비스
산업분류	CPC 87301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영국은 조사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13.

분야

사업 서비스

하위분야

기타 사업 서비스

산업분류

CPC 86764, 86769 및 8868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가.4조)

시장접근(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국경 간 서비스무역

1. 영국은 다음에 관한 유지 및 보수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철도 운송 장비

나. 내수 운송 선박

다. 해상 선박

라.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CPC 86764의 일부, 86769 및 8868)

2. 영국이 인가한 인정기관만이 영국을 대신하여 선박의 법정검사 및 인증을 수행할 수 있다. 설립이 요구될 수 있다.

기존의 조치

2018년 유럽연합(탈퇴)법에 의하여 영국 법에 편입되고
2019년 상선(인정기관)(개정)(EU탈퇴) 규정(S.I.
2019/270)에 의하여 개정된, 선박점검 및 조사기구의 공통
규칙 및 기준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
회 규정(EC) 제391/2009호

14.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산업분류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영국은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영국의 GATS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모든 양허된 분야에서의 약속과 GATS 제2조에 따른 모든 분야에서의 의무와 합치해야 한다.

기존의 조치

15.

분야

교육 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CPC 92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영국은 다음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어떠한 형태로든 공적 자금조달 또는 국가 지원을 받고 따라서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모든 교육 서비스. 외국 제공자에 의한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교육 서비스의 공급이 허용되는 경우, 교육 제도에 대한 사적 운영자의 참여는 비차별적으로 분배된 양허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나. 초등, 중등, 고등 및 성인 교육 서비스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그 밖의 교육 서비스(CPC 929)의 공급

기존의 조치

16.

분야

보건 및 사회 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CPC 931(CPC 9312 및 CPC 93191의 일부는 제외함) 및
CPC 933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영국은 다음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보건 서비스 - 병원, 구급차, 거주용 보건 서비스(CPC 9312 및 93191의 일부를 제외한 CPC 931) 포함

투자 -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 1) 어떠한 형태로든 공적 자금조달 또는 국가 지원을 받고 따라서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모든 보건 서비스의 공급
- 2) 병원 서비스(CPC 9311)를 제외한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모든 보건 서비스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보건 네트워크에 대한 사적 운영자의 참여는 비차별적인 양허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경제적 수요심사가 적용될 수 있다. 주요 기준: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운송 시설,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및 새로운 고용 창출

- 나. 연금 보험을 포함한, 보건 및 사회 서비스 (CPC 9312 및 93191의 일부를 제외한 CPC 931)

국경 간 서비스무역 -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 1)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 제도의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건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사회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

하위 유보항목 가 및 나에 다른 유보항목에서 다루는 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의료보조 인력 및 심리학자와 같은 전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보건 관련 전문직 서비스의 공급과는 관련이 없다.

- 다. 연금 보험을 포함한 사회 서비스

투자 - 시장접근, 내국민 대우

- 1) 어떠한 형태로든 공적 자금조달 또는 국가 지원을 받고 따라서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모든 사회 서비스 및 공적퇴직연금제도 또는 법정사회보장제도의 부분을 구성하는 활동이나 서비스의 공급
- 2) 조리원, 요양원 및 양로원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외한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 서비스의 공급

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사회 네트워크에 대한 사적 운영자의 참여는 비차별적인 양허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경제적 수요심사가 적용될 수 있다. 주요 기준: 기존 설립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운송 시설, 인구 밀도, 지리적 산포 및 새로운 고용 창출

기존의 조치

17.

분야

보건, 사회 및 교육 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1. 영국은 보건, 사회 또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의 공기업 또는 기존의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한국의 투자자 또는 그들의 투자에 의한 기업을 통제하기 위하여 그러한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권 및 그러한 지분과 자산 소유자의 능력을 금지하거나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한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영국은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고위 경영진의 국적이나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 또는 거주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2.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 시점에, 이 유보항목에 기술된 대로, 지분 또는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을 부과하거나, 국적 또는 거주 요건을 부과하거나,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는, 이 협정의 영국에

대한 발효일 후 채택 또는 유지되는 조치는 제7나.12조(비합치조치)제1항 및 제7가.7조(비합치조치)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존의 조치로 간주된다. 그리고

- 나. **공기업**이란 영국이 소유하거나 소유 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하며, 이 협정의 영국에 대한 발효일 후 기존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이나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을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18.

분야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CPC 963, 9619 및 96492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영국은 다음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도서관, 기록보관소, 박물관 및 그 밖의 문화 서비스의 공급(CPC 963)

나. 극장, 라이브 밴드, 서커스 및 디스코텍을 포함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CPC 9619)의 국경 간 공급

다. 특히, 복권, 즉석 복권, 카지노, 오락실 또는 면허취득 사업장에서 제공되는 도박 서비스, 베팅 서비스, 빙고 서비스 및 자선단체 또는 비영리기관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하는 도박 서비스를 포함한, 우연에 의한 게임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판돈을 거는 것을 수반하는 도박 활동(CPC 96492)의 공급

기존의 조치

19.

분야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수상 운송 서비스 및 수상 운송 부수 서비스

산업분류

CPC 72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1. 해상운송 및 선박에서 행해지는 그 밖의 모든 상업 활동

투자 -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국경 간 서비스무역 -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영국은 외항선 또는 내륙주운 선박에 있는 선원의 국적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투자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영국은 선박을 등록하거나 영국 국기를 게양하는 선박 운영 (어업, 양식업 및 어업 부수 서비스, 국제 여객 및 화물 운송(CPC 721)과 해상 운송 부수 서비스를 포함하여 외항선에서 행해지는 모든 상업 해상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투자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국경 간 서비스무역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영국은 연안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연안해상운송 서비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1982년 12월 10일 몬테고 베이에서 채택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규정된 영국의 대륙붕을 포함하여, 영국에 위치한 항구 또는 지점과 영국에 위치한 다른 항구 또는 지점 간의 여객 또는 화물 운송, 그리고

나. 영국에 위치한 동일한 항구 또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종료하는 운송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해상 활동을 지원하는 관련 운송에 적용된다.

2. 해상 운송 부수 서비스

투자 -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국경 간 서비스무역 -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영국은 도선 또는 선박접안 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오직 영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만이 예선 서비스(CPC 7214)를 제공할 수 있다.

3. 내륙 수로 운송 및 내륙 수로 운송 부수 서비스

투자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국경 간 서비스무역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영국은 내륙 수로 여객 및 화물 운송(CPC 722) 및 내륙 수로 운송 부수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유보항목은 내륙 수로에 대한 연안운송(CPC 722) 공급도 포함한다.

기존의 조치

20.

분야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철도 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CPC 7111 및 7112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영국은 철도 여객 운송(CPC 7111) 또는 철도 화물 운송(CPC 7112)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1.

분야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도로 운송 서비스

산업분류 CPC 712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영국은 설립을 요구하거나 도로 운송 서비스(CPC 712)의 국경 간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경제적 수요심사는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제한을 규정하는 영국의 택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다. 주요 기준: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규정된 현지 수요(CPC 71221)

기존의 조치 1995년 화물자동차(영업 등록)법

2018년 유럽연합(탈퇴)법에 의하여 영국 법에 편입되고 2019년 영업 등록 및 국제 대형 트럭 수송(개정 등)(EU 탈퇴) 규정(S.I. 2019/708)에 의하여 개정된, 도로운송 운영자 직업 추구를 위한 준수 조건에 관한 공통 규칙을 수립하고 이사회 지침 96/26/EC를 철폐하는 2009년 10월 2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071/2009호

2018년 유럽연합(탈퇴)법에 의하여 영국 법에 편입되고
2019년 영업 등록 및 국제 대형 트럭 수송(개정 등)(EU 탈퇴) 규정(S.I. 2019/708)에 의하여 개정된, 국제 대형 트럭 수송 시장 접근 공통 규칙에 관한 2009년 10월 2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072/2009호

2018년 유럽연합(탈퇴)법에 의하여 영국 법에 편입되고
2019년 국제 버스 서비스 시장 접근 공통 규칙(개정 등)(EU 탈퇴) 규정(S.I. 2019/741)에 의하여 개정된, 국제 버스 서비스 시장 접근 공통 규칙에 관한 2009년 10월 21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073/2009호와 개정 규정(EC) 제561/2006호

22.

분야

운송 서비스

하위분야

항공 운송 서비스 및 항공 운송 부수 서비스

산업분류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1. 우주 운송 및 우주선의 임대

투자 -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국경 간 서비스무역 -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영국은 우주 운송 서비스 및 우주선의 임대(CPC 733, 및 734의 일부)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항공 교통 관리 및 항공 교통 관제

투자 -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영국은 다음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NATS 홀딩스 및 그 승계기관

나. 항공 교통 관리 및 항공 교통 관제에 관련된
법정 권한의 행사 및 법정 기능과 의무의 수
행

3. 항공 서비스

투자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영국은 공항 운영 서비스를 제외한, 항공사 및 공항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항 운영 서비스는 공항 또는 공항 부지의 소유나 공항 또는 공항 부지에 대한 투자 또는 이사회가 수행하는 어떠한 기능도 포함하지 않는다.

투자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국경 간 서비스무역 -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시장접근, 현지주재

영국은 영국으로의 항공기 반입허가, 영국에서의 항공기 출발 또는 영국 내 항공기 운영을 규율하는 특수 항공 서비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항공 교통 관리 및 항공 교통 관제(제2항) 관련

2000년 교통법

23.

분야 어업, 양식업, 어업 부수 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ISIC 개정판 3.1 0501, 0502 및 CPC 882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최혜국 대우(제7나.6조 및 제7가.4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1. 영국은 특히 영국의 어업 정책 및 비당사국과의 어업 협정의 틀 내에서, 영국의 주권 또는 관할권하의 해역에 위치하는 생물자원 및 어장에 대한 접근 및 이용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영국은 다음의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영국의 국기를 게양한 어선의 어업활동이 영국과 경제적 연관성(조치에 명시된 한도에서 그리고 조건에 따른다)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조치, 그리고

나. 선박 소유자 또는 소유자들의 국적이나 회사의 설립지를 참조하여, 어선이 영국의 어업 기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조치

3. 영국은 다음의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가. 영국 항구에서 지정된 비당사국 선박에 할당된 쿼터에 따라 포획한 어획물의 양륙을 규제하는 조치

나. 영세 및 연안 어선 모두를 보존하기 위하여 회사의 최소 규모를 결정하는 조치

다. 어업에 관련된 기존 또는 미래의 국제 협정에 따라 차등대우를 부여하는 조치

라. 영국 국기를 게양한 어선 승무원의 국적에 관한 조치, 또는

마. 해양 또는 내륙 양식 시설의 설립에 대한 조치

기존의 조치

2020년 어업법

24.

분야 집수, 정수 및 배수

하위분야

산업분류 ISIC 개정판 3.1 41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영국은 식수의 공급 및 물 관리를 포함하여 집수, 정수 또는 가정용, 산업용, 상업용 또는 그 밖의 이용자에 대한 배수와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하는 활동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기존의 조치

25.

분야

에너지 생산 및 관련 서비스

하위분야

산업분류

ISIC 개정판 3.1 401, 402, CPC 7131 및 887(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는 제외함)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7나.5조 및 제7가.3조)
시장접근(제7나.4조제1항 및 제7가.5조)
현지주재(제7가.6조)

유보내용

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

영국은 가스의 운송 또는 송전 시스템이나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운송 시스템의 외국소유를 허용하는 경우, 영국의 에너지 공급 안보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국의 석유, 천연가스 또는 전력 수입량 점유율의 5퍼센트를 초과하며 비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기업이 통제하는 한국의 기업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에너지 유통에 부수된 서비스로 제공되는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의 조치

“